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구미시 구포쓰레기매립장의 사용종료시부터 신규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완료시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부지매입

- 토 지 : 1필지 33,058㎡ 정도
- 예정가격 : 5,600,000천원(실매입예정가 기준)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 원,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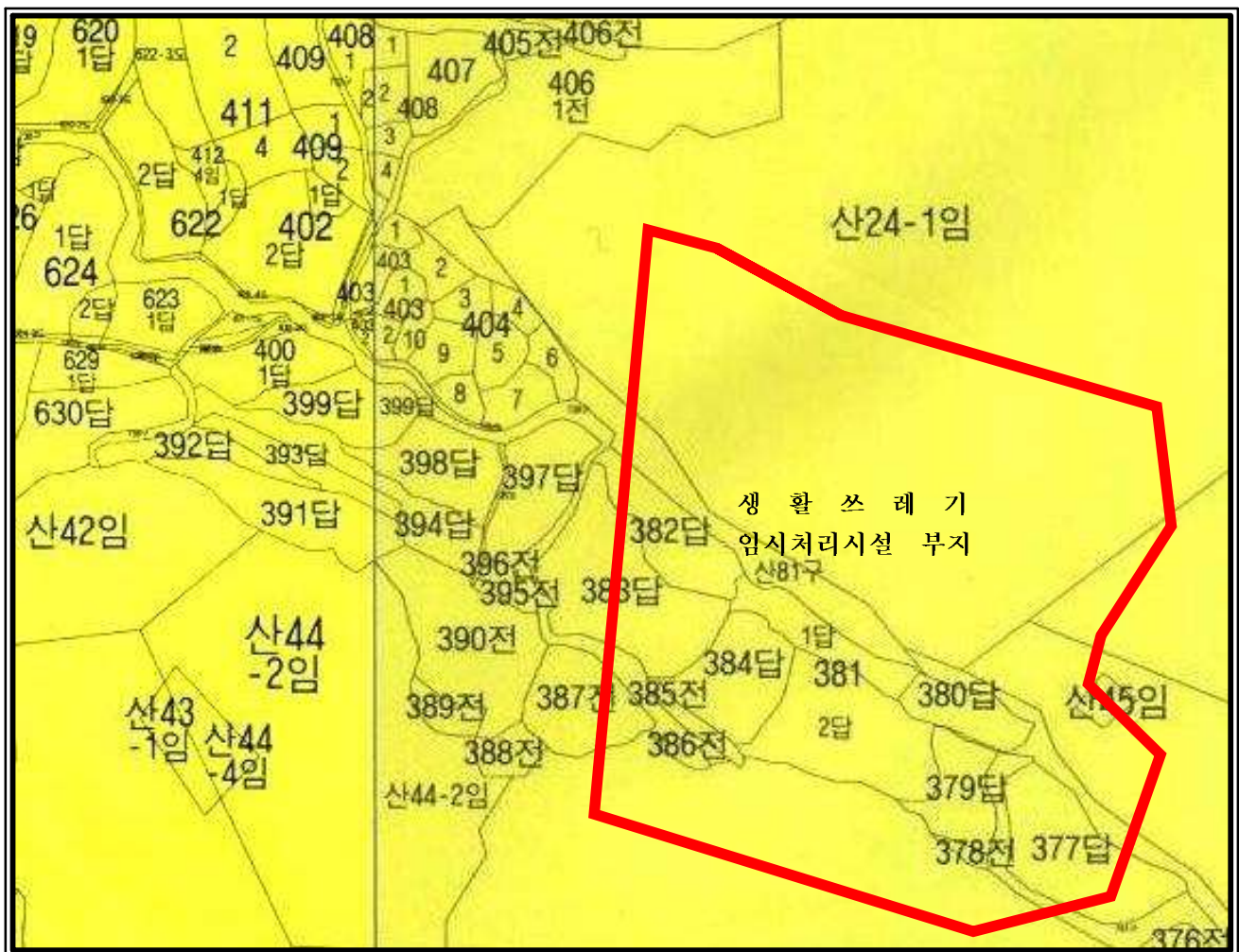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폐기물처리시설	구미시 금전동 산24-1 번지일대	33,058	5,600,000	2007. 상반기	구미시생활 폐기물임시 처리시설 설치	한국수자원 공사	
		이	하	여	백			
	계		33,058	5,600,000				

취득대상 토지

□ 재산의 표시 : 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시설 부지

- ▶ 소재지 : 구미시 금전동 산24-1번지일대
(구미국가4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 ▶ 지 목 : 임야, 전, 답(4단지 조성후 폐기물처리시설)
- ▶ 면 적 : 33,058 m²

위 치 도



□ 구미시 생활폐기물임시처리시설 주변도(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 현 황 사 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